

자동차재탐지설비 일반점검표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연월일 및 완공검사번호	점검기간 : 점검자 : 서명(또는 인) 설치자 : 서명(또는 인)		
탐지설비의 호칭번호				
점검항목	점검내용	점검방법	점검결과	비고
감지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감지장해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중계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수신기 (통합조작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표시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경계구역일람도의 적부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주음향장치 지구음향장치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발신기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능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비상전원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전환의 적부	작동확인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배선	변형·손상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접속단자의 풀림·탈락 유무	육안	[]적합 []부적합 []해당없음	
기타사항				

작성방법

1. 이 일반점검표는 규칙 제6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데 사용합니다.
2. “점검기간”란에는 점검을 개시하여 완료할 때까지의 기간을 기재하고, 그 기간이 1일인 경우에는 점검일자를 기재합니다.
3. “점검자”란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정기점검의 실시자의 성명과 서명(또는 인)을 기재하고, 실시자의 위임 등에 따라 실시자가 아닌 자가 점검을 하더라도 위 실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이 경우 실시자가 아닌 구체적인 점검행위를 한 자의 성명, 상호 등을 “점검항목”란의 기타사항에 추가로 기재합니다.
4. “설치허가 연월일”란에는 허가청이 해당 제조소등에 대한 설치허가처분의 문서를 최초로 통지한 날을 기재하고, “완공검사번호”란에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완공검사에 합격하여 부여받은 번호를 기재합니다.
5. “사업소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사업소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안전관리자”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 선임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안전관리자가 다수의 제조소등에 중복하여 선임된 경우에는 ‘중복 선임’등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추가로 합니다.
7. “설치위치”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이 속한 곳의 주소와 해당 제조소등의 설치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8. “품명”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을 전부 기재합니다(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
9. “허가량”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에서 허가를 받고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총량을 기재하고, 복수의 품명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품명별 저장량 또는 취급량을 각각 기재합니다.
10. “위험물 저장·취급 개요”란에는 해당 위험물의 용도, 저장·취급기간, 저장·취급방법 등 해당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11. “시설명/호칭번호”란에는 제조소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소등의 관리명칭, 관리번호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부여된 자동차 등록번호(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 등을 기재합니다.
12. “점검결과”란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 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 등을 합니다.
 - 가. 점검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적합”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란에 각각 √표시를 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에 부존재하는 점검항목 등에 대한 점검결과는 “[]해당없음”란에 √표시를 합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접지저항치의 적부”에는 접지측정 부위별 그 저항치 측정값을 별지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 다. 점검방법이 수개인 경우에는 해당 점검방법을 모두 이행해야 하나, 그 중 일부를 이행하더라도 적절한 점검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13. “비고”란의 기재방법, 기재사항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부적합한 점검항목에 대한 수리·개조·이전 등을 한 연월일과 수리·개조·이전 등의 구체적 내용을 기재합니다. 해당 제조소등의 구조, 위험물의 저장·취급형태 등에 비추어 특정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점검곤란”표기와 그 사유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은 공란으로 둡니다.
 - 나. 점검항목 중 일부에 대해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을 이미 실시하여 해당 점검항목에 한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 등의 개요를 기재함. 이 경우 “점검결과”란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점검결과를 표시함.
14. 다수의 제조소등에 각각 설치된 소화설비 중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성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설비가 소속되는 대표 제조소등을 지정하고, 그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를 작성하면 나머지 제조소등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점검결과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점검항목에 대한 “비고”란에는 대표 제조소등의 일반점검표에 해당 점검결과가 표시되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15. 소화설비의 일반점검표 중 “제조소등의 구분”란에는 해당 소화설비가 설치된 제조소등을, “소화설비의 호칭번호”란에는 해당 소화설비에 대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